해외직구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해외직구」 콘텐츠에서는 해외직구에 특유하게 적용되는 관세 및 부가세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의 내용, 해외쇼핑 피해사례 및 구제절차 등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외직구의 개념 및 관계법령 등을 기본으로 하여, 기본개념과 적용법령, 주요 국가별 면세한도 및 면세적용방법, 배송분실 및 교환반품 등 관련피해사례 및 그에 따른 구제절차 등을 수요자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외직구 1
1. 해외직구 개요 4
1.1. 해외직구의 개념 및 유형 4
1.1.1. 해외직구의 개념 4
1.1.2. 해외직구의 유형 및 통관방법 5
2. 해외직구 절차 7
2.1. 해외직구의 준비 7
2.1.1. 개인통관번호 신청하기 7
2.2. 구매물품 정하기 9
2.2.1. 직구제한물품 알아보기 9
2.2.2. 전자제품 및 통신용품 구매 12
2.2.3.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 14
2.2.4. 식품, 화장품 및 총포·도검 등 15
2.3. 주문 및 결제 17
2.3.1. 물품 주문 및 결제 17
2.4. 통관절차 18
2.4.1. 통관절차 개관 18
3. 해외직구의 과세와 면세 23
3.1.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23
3.1.1. 관세·부가세 등의 개념 23
3.1.2. 관세·부가세 등 계산하기 24
4. 해외직구 분쟁해결 28
4.1. 소비자 분쟁해결 28
4.1.1. 교환·반품 및 환불 28
4.1.2. 분쟁해결 절차 29

1. 해외직구 개요

1.1. 해외직구의 개념 및 유형

1.1.1. 해외직구의 개념

"해외직구"의 개념 및 절차

"해외직구"란

▪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직접배송,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으로 구분됩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해외직구-해외직구 유형 및 과정 참조].

> ※ 해외직구의 유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해외직구의 유형 및 통관방법(1-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함)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관세법」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함)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제1호).

> ※ 이 콘텐츠는 해외제품의 개인 구매에 한정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무역업 및 수입계약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무역제도 II (수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유형별 절차

▪ 해외직구의 유형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 해외직구-해외직구 유형 및 과정 참조].



※ 관세·무역·외국환 관련법령 및 판례에 관하여는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 해외직구의 유형 및 통관방법

해외직구의 유형 및 통관방법

해외직구의 유형

▪ "해외직구"는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해외직구-해외직구 유형 및 과정 참조).

1. 직접배송: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
2. 배송대행: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3. 구매대행: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쇼핑몰형),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위임형)

< 해외 직접구매의 유형 >



해외직구의 통관방법

▪ 특송화물의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2023, 2쪽 참조)

1.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관세법」 제30조 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함)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은 목록통관을 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94조제4호, 제241조제2항제3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본문·단서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1호·제2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1호).

2. 수입신고(일반통관)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방법을 말하며,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1항 참조).

※ "특송화물(특급탁송물품)"이란 서류, 카탈로그, 수출입물품의 샘플, 해외여행자가 구입하여 의뢰한 탁송품, 해외의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물품을 말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 통관정보>

※ 특송화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통관절차 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직구 절차

2.1. 해외직구의 준비

2.1.1. 개인통관번호 신청하기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개념

"개인통관고유부호"란

▪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

▪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이란 신청인의 휴대전화 또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조회 및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시스템을 말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6호].

>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요성**
>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운송장 번호를 모르더라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직구 팁」 (인천세관 특송국, 2020. 11. 16. 발행) 3p.].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수기재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일반통관)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물품의 목록통관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제7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본문).

>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관세청은 2019년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2020년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 <출처: 「12월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관세청 보도자료, 2020. 11. 18.)>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체계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

1. 개인 통관고유부호 구성체계(예)

P	11	123456789	9
개인	발급년도	부여번호	오류검증부호

2. 개인

모든 개인통관고유부호에 P를 기재한다.

3. 발급년도

부호를 발급한 연도중 끝 2자리를 기재한다.

예) 2011년 ⇒ 11

4. 부여번호

무작위로 9자리 숫자를 부여한다.

5. 오류검증부호

부호 부여나 입력의 오류를 체크하기 위하여 1자리 숫자를 부여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방법

▪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함) 사본.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2.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신규 발급의 경우 신규 발급일부터 1년, 정보변경의 경우 변경 승인일부터 1년, 갱신의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재발급의 경우 재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만료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 통관고유부호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16조제4항·제5항).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UNI-PASS) >



<출처: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 >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구매물품 정하기

2.2.1. 직구제한물품 알아보기

구매할 물품 선정하기

물품선정 시 주의사항

▪ “직접구매 해외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함)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함)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제4호).

▪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가 발생합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 해외직구-사전준비 단계-해외직구 제한물품 참조].

▪ 따라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구매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물품이 아닌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이 콘텐츠의 『관부가세 등 계산하기(3-1-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

▪ 해외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법」 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식물방역법」 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1.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위해제품 및 리콜제품 확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이 안전관리대상 제품이거나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인 경우에는 통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관세청장과 공동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제1항 참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수입제품이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수입제품의 반송·폐기 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품 수거등의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제4항제1호·제2호 참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제품 수거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참조).

※ 위해 우려 제품, 리콜제품 및 인증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 Korea)의 인증 정보검색, 리콜 정보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35조제1항).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짝퉁 등 지재권 침해물품은 용도,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직구 팁」(인천세관 특송국, 2020. 11. 16. 발행) 8p].

※ 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직구 시 확인해야 할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식물, 수산물, 축산물 및 식품을 수입할 경우의 검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수출입 검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전자제품 및 통신용품 구매

전자제품 및 통신용품의 직구

전자제품 직구 시 유의사항 일반

▪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제11호 및 제5조), 해외 직접배송의 경우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사용 시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 구매대행업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함)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함)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이더라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해당하는 제품은 구매대행 할 수 있으므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 소비자는 해당제품을 구입·사용 시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안전인증대상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3 및 별표 4에서 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인증(KC마크)”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

※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또는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또는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제품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전자제품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

안전인증대상 또는 안전확인대상 전자제품의 수입규제

▪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안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표시등 또는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표시등 또는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참조).

▪ 다만, 구매대행업자는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

1.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정하는 제품: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주방용전열기구, 모발관리기등
2.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정하는 제품: 이·미용기기, 게임기구, 모니터 등
3.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통신기기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

「전파법」에 의한 통신기기 등의 수입제한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전파법」 제58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제1항).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기

   라.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인증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마.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전파법」 제58조의3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제1항 및 별표 6의2 제1호자목).

※ 그 밖에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에 관하여는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3.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직구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 해외직구-사전준비 단계-해외직구 제한물품 참조].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 위해식품 차단목록 및 검출성분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면세

▪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아래와 같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4조제4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 11).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한약재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상황버섯 녹용 기타 한약재	합 300g 300g 검역후 150g 각 3kg	ㅇ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ㅇ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오·남용우려의약품			ㅇ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6병	ㅇ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 건강기능식품이 6병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제제	모발재생제 제조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100ml×2병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총6병(6병 초과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므로 초과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 11).

※ 그 밖에 농림수축산물 등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4. 식품, 화장품 및 총포·도검 등

유형별 통관 방법

식품

▪ 식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이므로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 및 별표 1 제7호).

※ 목록통관, 일반수입신고 등 해외직구의 유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해외직구의 유형 및 통관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 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 11).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농림수 축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잣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각 5kg 5kg 1kg 각 10kg 5kg 각 5kg 각 5kg	ㅇ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Q. 해외직구를 통해 성기능에 좋다는 식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해외직구 제품에서 비아그라 등 금지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제가 구매하려는 제품에 금지성분이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식품을 해외직구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해식품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해식품의 제품명, 검출성분 및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배

▪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해야 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7호, 「지방세법」 제49조제3항, 제52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

주류

▪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참고).

▪ 다만,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7호, 「주세법」 제1조, 제2조제2호, 제21조, 제22조 및 「교육세법」 제3조제4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도검류(예: 권총, 칼, 창, 화약, 폭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다만, 주방용 칼, 날이 서있지 않은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2023, 9쪽 참조)

> ※ 총포,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 민원센터(☎ 국번없이 1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향수

▪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10쪽 참조).

▪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이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및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9쪽 참조).

> **Q. 기능성이 아닌 일반 화장품(non-functional cosmetic)을 해외 직접배송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총 가격이 미화 130불입니다. 이 경우 통관절차과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
> A.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및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10쪽 참조).

분유

▪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11쪽).

▪ 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3. 주문 및 결제

2.3.1. 물품 주문 및 결제

물품 주문하기

물품 구매계약

▪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품 구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일반적인 상거래행위와는 달리 소비자가 상품 등을 직접 보지 않고

표시·광고에 의존하여 구매함으로서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상품 등이 전달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의 소요 과정에서 파손,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참조].

> ※ 인터넷쇼핑몰 이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인터넷쇼핑』 물품 구매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품 결제하기

전자금융거래

▪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에는 인터넷뱅킹, 온라인계좌이체, 전자자금이체, 모바일뱅킹 등이 있습니다. 해외직구에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차지백 서비스'를 통해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란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하며,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 (관세청 발행, 2017. 11. 17) 참조]

> ※ 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교환·반품 및 환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그 밖에 신용카드 해외결제 시 주의사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신용카드 이용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통관절차

2.4.1. 통관절차 개관

해외직구의 통관절차

통관절차 일반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는 운송방법에 따라 다음의 통관절차가 각 적용됩니다[<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개인통관-해외직구통관절차].

- 특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특송통관절차 적용

- 우체국을 통해 반입된 경우: 우편통관절차 적용
- 일반 운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 적용

특송통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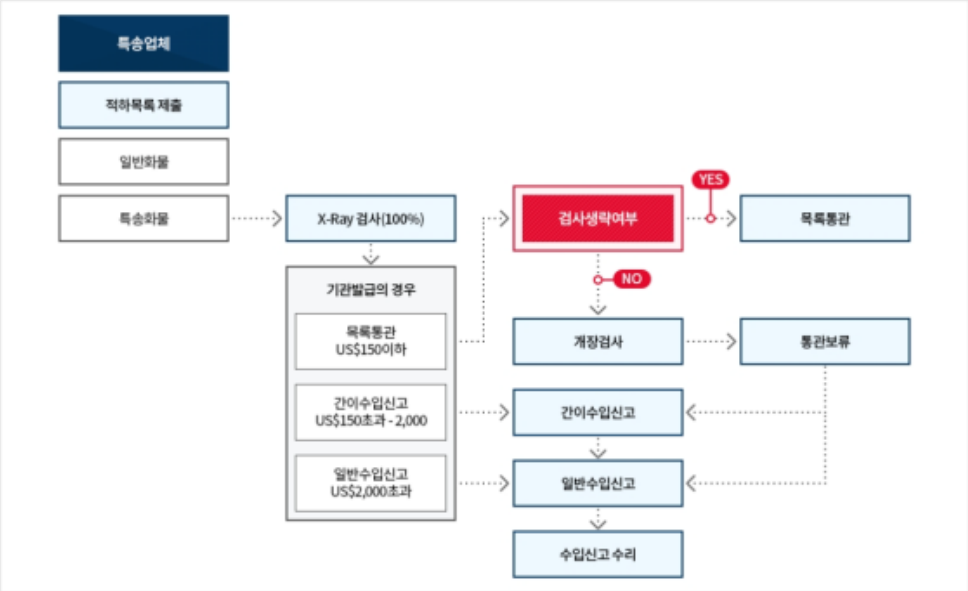
특송통관절차 일반

▪ “특송통관”이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1항).

> ※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함)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제18호).

▪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수출입 통관-특송물품 통관].

<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수출입 통관-특송물품 통관>

> ※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관세법」 제254조의2 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 “특송업체”란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를 말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9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특송물품의 통관방식

▪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특송물품의 통관제도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 및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수출입 통관-특송물품 통관 참조).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는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물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이수입신고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해당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이하 "간이신고"라 함)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조제1항제1호).

※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은 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을 포함하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통관절차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1항).

※ 수입신고의 시기 및 신고 등 일반통관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장제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방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유형 >

구분		일반 특송화물	미국발 특송화물	과세기준
과세기준		미화 150불 이하	미화 200불 이하	비과세
일반통관	간이신고	미화 150 ~ 2,000불	미화 200 ~ 2,000불	미화 150불 이하 면세
	일반수입신고	미화 2000불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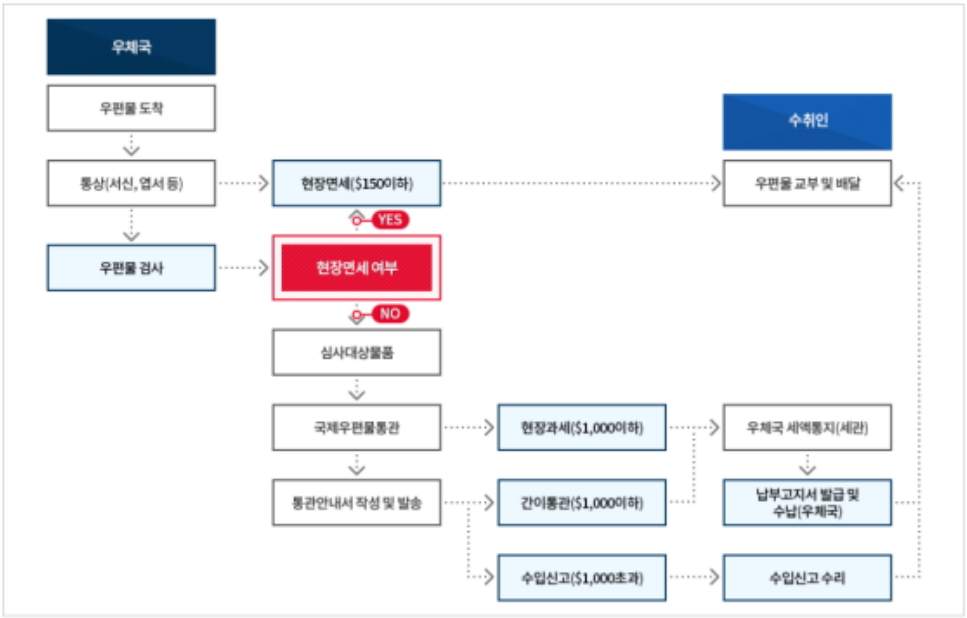
<출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 통관정보 참조>

우편통관절차

우편물의 통관절차

▪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수출입 통관-우편물 통관).

< 국제우편물의 통관절차 >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수출입 통관-우편물 통관>

우편물의 통관방법

▪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통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합니다(「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통관
- 간이통관
-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

※ 통관진행정보는 이 콘텐츠의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외직구의 과세와 면세

3.1.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3.1.1. 관세·부가세 등의 개념

해외직구 시 부과되는 세금

관세·부가세의 개념

▪ 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가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관세법」 제14조 및 제15조).

▪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2023, 14쪽).

구분	세액	
관세	과세가격 × 관세율	
내국세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주세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
	교육세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주세액 × 교육세율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부가세율 10%

※ 종가세 기준이며, 세액은 경우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

※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 "주세"란 주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주세법」 제1조).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 "교육세"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교육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 주요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율의 적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관세법 시행령」 별표 2로 정하는 물품(보석, 고급시계, 고급 가방, 녹용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함.

3. 탁송품 또는 별송품

> ※ 간이세율의 적용품명 및 세율은 「관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과되는 세금

▪ 술, 담배 등은 품목에 따라 주류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이 추가로 부가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4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교육세법」 제3조제2호, 제4호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3.1.2. 관세·부가세 등 계산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예상세액 조회하기

▪ 해외 직구물품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서비스(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구매한 물품에 대해 스스로 예상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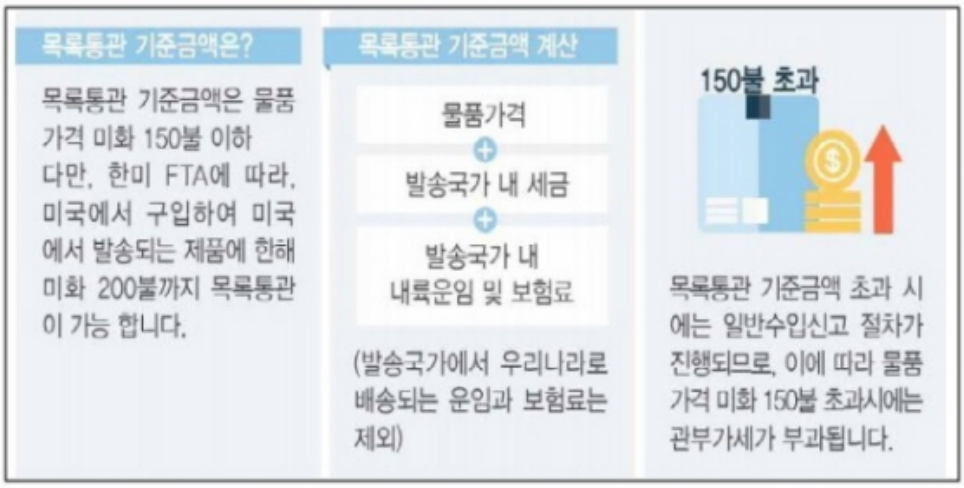
<출처: 관세청(customs.go.kr), 알림소식-홍보마당-해외직구 여기로 참조>

>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관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5)>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2023, 6쪽 참조).



<출처: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6쪽 참조>

합산과세

▪ 세관장은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및 별표 11].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소액물품 자가사용과 면세

소액물품 등의 면세

▪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가격(「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과격에서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함)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94조제4호, 제241조제2항제3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본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 11).

▪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

자가사용 인정기준

▪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농림축수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각 5kg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호두	5kg	
	잣	1kg	
	소, 돼지고기	각 10kg	
	육포	5kg	
	수산물	각 5kg	
	기타	각 5kg	
한약재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합 300g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상황버섯	300g	
	녹용	검역후 150g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기타 한약재	각 3kg	
오·남용우려의약품			○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6병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 건강기능식품이 6병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제제	모발재생제	100ml×2병	
	제조환	8g入×20병	
	다편환, 인삼봉황	10T×3갑	
	소염제	50T×3병	
	구심환	400T×3병	
	소갈환	30T×3병	
	활락환, 삼편환	10알	
	백봉환, 우황청심환	30알	
기호물품	주류	1병(1ℓ 이하)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담배는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과세 ○ 2종류 이상의 담배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만 면세통관범위 적용 ○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 (예: 60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기타유형 전자담배	110g	
	기타담배	250g	
	향수	60ml	
기타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이더라도 수입이 제한될 수 있음 - (예시) 야생동물 관련 제품(CITES 규제대상), 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등		

※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양제 4개와 단백질보충제 4개를 미화120달러에 구매했다. 얼마 후 자가 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영양제와 단백질보충제는 개인의 자가사용에 한해 총6병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6병을 넘을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부처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하다.

<출처: 해외직구시 세금폭탄 피하려면! 면세규정부터 챙겨야, (관세청 보도자료, 2020. 9. 17.)>

자가사용 위반 시 제재

▪ 소액물품 자가사용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 한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밀수출입죄

▹ 「관세법」 제241조제1항·제2항(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관세법」 제269조제2항제2호).

2. 관세포탈죄

▹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관세법」 제270조제1항 본문).

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한 자

다.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합니다(「관세법」 제270조제5항).

4. 해외직구 분쟁해결

4.1. 소비자 분쟁해결

4.1.1. 교환·반품 및 환불

해외직구 물품의 교환·반품 및 환불

교환·반품 및 환불 사유 및 방법

▪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환불은 단순변심, 배송 중 파손,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의 배송 등 온라인 거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관세부담, 국내 통관 불가 등 해외직구 특수성에 기인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도 국내법에 따라 교환되나요?

구매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되나, 직접배송(개인직구)과 배송대행의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직접협의하여야 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주의보(2014.11.17.) 참조>

※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외직구 반품·환불 관련 정보를 모아 "해외직구 반품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는 해외직구 반품 처리 절차(수출신고, 관부가세 환급신청 포함)와 유의사항, 반품 결정 시 확인 사항 및 반품 소요 비용·기간 등 해외직구 반품 소비자 대응 요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해외직구물품의 반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해외직구 반품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 차지백 서비스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후, 미배송·오배송 등의 피해로 사업자와 자율적 해결이 곤란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거래대금을 환급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신청기간 : 거래일 또는 물품배송일로부터 120일

▪ 기본절차 : 소비자가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업자(가맹점)은 신용카드사에 45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 입증서류 :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대화내역), 물품 구입내역 및 구입영수증 등

※ 차지백 서비스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crossborder.kca.go.kr,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2017. 11. 17)> 또는 각 신용카드 발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

▪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습니다(「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반품환급신청 제출서류

▪ 반품환급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관세행정-개인통관-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참조).

구분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초과 물품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
공통 서류	1. 환급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	
제출 서류	3. 수출 신고필증	3. 물품 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자료

※ **관세환급 신청절차**

1. (온라인) 관세청 전자통관 포털(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사용자 등록

· 회원유형 선택(일반(개인) 사용자) → 약관내용 확인 및 동의 → 본인인증((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 인증과 아이핀 인증 중 선택) → 사용자등록(사용자 정보 입력) → 부호 및 서비스 신청(업체유형에서 "개인화주 직접신고"를 선택) → SMS 신청

2. (세관 방문) 신고인부호 발급 → 수출신고서 작성 → 수출 물품 검사

· 전자통관 포털에서 사용자 등록 후 세관을 방문하여 신고인 부호를 받음(개인통관 고유번호와 별개이며 수출신고 자격을 얻기 위한 용도). 1회 발급 시 지속 사용 가능

· 세관의 신고인부호 부여 및 사용자등록 승인 후 전자통관 포털에 접속, 수출신고서 작성

3. (우체국방문) 물품 발송

4. (세관 방문) 환급신청서 작성(온라인 신청 후 서류 우편발송 가능) → 세관 확인 후 환급

· 물품 발송(적재) 후 전자통관 포털에서 환급신청서(과오납 및 계약상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 서명한 신청서 원본과 통장사본, 수입·수출신고필증을 세관에 제출(우편 제출 가능)

<출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 관세 환급 참조>

4.1.2. 분쟁해결 절차

직접해결

판매자와 협의

▪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 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역 템플릿 및 폴리스리포트 양식 이용하기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은 해외직구 관련 분쟁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별 번역템플릿 및 폴리스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영문 이의제기 템플릿 및 폴리스리포트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자율분쟁해결 — 이의제기 템플릿 / 폴리스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 쇼핑몰 및 여행사의 취소·환불 정책 이용하기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은 해외 주요 쇼핑몰 및 여행사의 취소·환불정책 및 분쟁해결절차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해외주요 쇼핑몰 및 여행사(취소·환불정책)별 분쟁해결 절차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crossborder.kca.go.kr), 자율분쟁해결-분쟁해결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 의한 해결

소비자 상담기구 이용하기

▪ 소비자상담센터[전화상담(☎ 1372) 또는 인터넷상담(http://www.ccn.go.kr)],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 단체 등에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원들이 적절한 대처방안 또는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담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은 소비자상담 후 가능합니다. 상담은 아래의 방법은 이용해주십시오.

>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인터넷 상담 : www.ccn.go.kr(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상담

▪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구매대행업자 또는 배송대행업자와 발생한 분쟁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상담대상이 아니므로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온라인 상담 및 품목별 상담사례 찾기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crossborder.kca.go.kr), 상담신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